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I.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
| | |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0 |
|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 | |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 | |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 | |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 |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5 | |
| |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75 |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 0.75 0.5 0.25 |
| | ②장애인기업 |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 1.5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지원 |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
| 다. 고용창출 |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p>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p> <p>(1) 대기업</p> <p>(가) 7% 이상인 기업 3.0</p> <p>(나) 6% 이상인 기업 2.0</p> <p>(다) 5% 이상인 기업 1.0</p> <p>(2) 중기업</p> <p>(가) 8% 이상인 기업 3.0</p> <p>(나) 7% 이상인 기업 2.0</p> <p>(다) 5% 이상인 기업 1.0</p> <p>(3) 소기업 및 소상공인</p> <p>(가) 11% 이상인 기업 3.0</p> <p>(나) 9% 이상인 기업 2.0</p> <p>(다) 5% 이상인 기업 1.0</p> <p>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p> <p>(1) 6인 이상 1.5</p> <p>(2) 3~5인 1.0</p> | |
| |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 <p>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p> <p>(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p> <p>(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p> |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0 |
| | |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5 |
| |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 |
| | |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75 |
| | |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5 |
| | |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0 |
| | |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 1.5 |
|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2.0 |
| |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 2.0 |
| | |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1.5 |
| |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 |
| | | (1) 0.5배 미만인 경우 | 2.0 |
|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 | 1.5 | |
|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 | 1.0 | |
|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 | 0.5 |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 삭 제> | 0 |
| |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 A. 중소기업인 경우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1.5 1.25 1.0 1.5 1.25 1.0 |
| 라. 저출생 대응 | 저출생 대응 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 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2.0 2.0 |
| 마.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 지원 |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 | 2.0 0.5 0.5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 <p>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p> <p>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으로 선정된 자</p> <p>H. < 삭 제 ></p> <p>I. < 삭 제 ></p> <p>J.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p> <p>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p> <p>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 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p> <p>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p> <p>N. < 삭 제 ></p> <p>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p> <p>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p> | <p>1.0</p> <p>2.0</p> <p>2.0</p> <p>2.0</p> <p>2.0</p> <p>2.0</p> <p>1.25</p> <p>1.0</p> |
| <p>바. 불공정 계약 행위</p> | <p>①납품지연</p> | <p>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p> <p>(1) 10%이상</p> <p>(2) 8%이상~10%미만</p> <p>(3) 6%이상~8%미만</p> <p>(4) 4%이상~6%미만</p> | <p>△2.00</p> <p>△1.75</p> <p>△1.50</p> <p>△1.00</p>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 (5) 2%이상~4%미만 (6) 2%미만 | △0.50 △0.25 |
| |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 ①채불사업주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채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B. <삭제> | △2.0 |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II.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바.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와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8. 12월 | ‘09. 1월 | ‘09. 2월 | ‘09. 3월 | ‘09. 4월 | ‘09. 5월 |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 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 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dots\dots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 10.166\dots = 11$ 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 10.166\dots = 11$ 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계산식} = \frac{\text{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text{기간제근로자} + \text{소속 외 근로자}}{(\text{소속근로자} + \text{소속 외 근로자})}$$

-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 삭제 >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지정)기관 | 비고 |
|----------------------|----------|----|
| A.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장관 | |
|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

나. 중복평가

-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
| A. <삭제> | <삭제> | <삭제> |
| B.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 C. <삭제> | <삭제> | <삭제> |
| D. 우수물류기업 |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 우수물류기업인증서 |
| E. <삭제> | <삭제> | <삭제> |
| F. 품질경영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
| G.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H. <삭제> | <삭제> | <삭제> |
| I. <삭제> | <삭제> | <삭제> |
| J.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 K.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 L.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 N. <삭제> | <삭제> | <삭제> |
| O. 고령자친화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다.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 | 3,000,000 | 0 | 0 | 0 | |
| B | 20,000,000 | 0 | 0 | 0 |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 계 | | | 22,000,000 | 770,000 | 3.5%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 3) 세부항목 “A”와 ”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